주요국의 공정거래제도 운영

본 협회 조사부

미 국

FTC, BP Amoco - Atlantic Richfield 합병 승인

FTC는 BP Amoco사(이하 "BP사"라 함)와 Atlantic Richfield사(이하 "ARCO사"라 함)간의 270억 달러 규모의 합병계획에 대하여 반경쟁적인 내용의 해소를 조건으로 한 동의명령안을 받아들였다. 상기 조건이란 BP사가 알래스카주 North Slope(ANS)에서의 석유생산에 관한 ARCO사의 모든 자산을 Phillips Petroleum사(이하 "Phillips사"라고 함) 또는 FTC가 승인하는 별도의 회사에 양도하라는 것이다. 자산양도는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또한 BP사는 오클라호마주 Cushing에서의 원유사업에 관한 ARCO사의 모든 자산에 대하여도 4개월 이내에 분리하여야 한다.

FTC의 Richard Paker 경쟁국장은 "동의명령에서 요구한 광범위한 도매단계에서의 분리로 당초 FTC가 합병계획을 저지하기 위하여 예비적 금지에서 요구한 반경쟁적 문제가 해소하게 되었다. 피심인과의 생산적인 교섭을 통하여 FTC는 복잡한 합병에 대한 소송을 계속할 필요 없이 완전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FTC의 심판개시결정에 의하면 합병계획안은 다음의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개정된 클레이톤 법 제7조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① Alaska North Slope(ANS)에서의 원유의 생산, 판매, 배달

② 서해안의 특정 정제업자에 의해서 사용되는 원유의 생산, 판매, 배달

③ 서해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유의 생산, 판매, 배달

④ Alaska North Slope(ANS)에 있어서의 석유 채굴권의 취득

⑤ Alaska 횡단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의한 원유 운송 판매

⑥ Alaska North Slope(ANS)에 있어서의 천연가스의 상업판매를 위한 개발

⑦ 오클라호마주 Cushing에로의 원유 파이프라인 운송 제공 또는 오클라호마주 Cushing에서의 원유 저장

명령안은 BP사에 대해 석유·가스의 이권, 탱커, 파이프라인의 이권, 부동산 탐색 데이터, 채택된 장기 공급계약을 포함하여 완전히 독립된 ARCO사의 사업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명령안에서 분리대상이 되고 있는 ARCO Alaska사의 대부분의 자산은 심결에 대한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외의 자산은 6개월 이내에 양도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양도하지 않는 경우 FTC는 양도를 위한 관재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클라호마주 Cushing을 에워싸고 있는 경쟁상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명령안은 BP사에 대해 이하의 자산을 FTC가 승인하는 회사에 4개월 이내에 분할할 것을 요구하였다.

㉠ Phillips사의 자회사와 공동사업으로 되어 있는 파트너인 Seaway Pipeline사의 50%의 지분권

㉡ Cushing, Texas주 Midland 지역의 line 운송 및 pumpover 사업을 포함하여 ARCO사의 원유터미널 시설

㉢ 서부 Texas로부터 Houston까지의 400마일, 직경 24인치의 원유 파이프라인인 Rancho 파이프라인에 있어서의 ARCO사의 지배권

㉣ New Mexico주 Jal로부터 Texas주 Wichita Falls 그리고 Cushing에 이르는 416마일의 원유 파이프라인인 Basin 파이프라인에 있

어서의 ARCO사의 완전한 소유권

ⓓ ARCO사가 가지고 있는 Midland 주위에 집중되어 있는 집배 파이프라인인 서부 Texas Trunk System

이 동의안의 패키지는 이하의 독립유지명령(an order to Hold separate)이 포함되어 있다.

ⓐ 분리중의 자산에 대해 경쟁상의 생산능력을 유지할 것

ⓑ 중요한 비밀정보를 BP사와 분리된 사업과 교환하지 않을 것

ⓒ 분리과정중에 경쟁상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명령의 조건에 근거하여 FTC는 분리된 자산을 감시하고, 당해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령 확정 후 10년간 동의명령은 피심인이 직·간접으로든 FTC에 먼저 통지함 없이 분리가 요구된 자산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이든 재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당사자는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준수에 대한 보고를 FTC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60일간 매일 보고의무를 지게 된다.

심결안은 2000년 5월 15일까지 30일간의 Public comment에 부쳐진 후 FTC는 심결을 확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FTC는 동의명령안과 독립유지명령을 5대 0의 표결로 채택하였다.

■ 2000. 4. 13, FTC 발표

미 법무부, Alcoa와 Reynolds의 Aluminum 합병에 대해 분리 청구

미 법무부는 세계 최대의 알루미늄 회사인 Alcoa Inc와 Reynolds Metals Company사의 50억 달러 규모의 합병계획에 대하여 반트러스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텍사스주 Corpus Christi에 있는 Reynolds 정제소와 높은 생산성과 최신 시설의 Australia 정제소에 대한 지배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요구한 분리조치에는 알루미늄에 사용되는 가루인 Alumina와 기타의 제품을 생산하는 정련소도 포함된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5월 3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고 동의판결안을 제안하였다. 이 동의판결을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대한 소송과 당해 거래에 대한 법무부의 경쟁상의 반대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Joel I. Klein 반트러스트국장은 "알루미늄산업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광범위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경쟁적인 가격으로 충분한 알루미나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분할조치에 의해 알루미늄 생산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알루미늄을 이용하는 사업자 및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는 미국의 소비자는 경쟁의 감소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알루미나 정련소는 두 종류의 알루미나, 즉 보그사이트에서 정련되는 분말인 정련성 알루미나(SGA)와 화학성 알루미나(CGA)를 제조한다. SGA는 알루미늄 금속 생산에 있어서 불가결의 원료이며, 알루미나 금속은 알루미늄 호일, 음료용 캔, 건축재, 항공기 기체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쓰여진다. CGA는 세제, 조리대, 난연재 등 수많은 산업용 또는 소비자제품의 생산에 쓰여진다.

기소장에 의하면 당해 취득계획은 SGA와 CGA의 정련과 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된다. 당초 제안되었던 Alcoa사에 의한 Reynolds사의 매수는 알루미나를 포함하는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제조업자와 고객에 대하여도 높은 가격을 강요하게 된다.

동의판결안에 따라 Alcoa사는 오스트리아 서부의 다링랜지에 소재하는 Worsley 정련소에 대해서 Reynolds사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다. Worsley는 세계에서 가장 비용이 저렴한 알루미나 정련소 중의 하나이다. 동의판결안은 또한 Reynolds사에 대하여 미국에 있어서 SGA와 CGA를 생산하고 있는 Reynolds사 소유의 텍사스주 Corpus Christi에 있는 정련소를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도안이 없었다면, Alcoa사는 Reynolds사의 매수 결과 세계의 SGA시장의 거의 38%를 소유 또는 지배하게 될 것이다. CGA에 대하여 Alcoa사는 북미시장에 있어서 약 59%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5월 3일 양 당사 회사에 대하여 독일의 Stade에 있는 Reynolds사의 정련사업의 매각도 포함하여 일정 부분을 분리토록 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EC의 경쟁당국과 조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협의를 하였다. 미국과 유럽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Alcoa사에 대하여 Reynolds 소유의 모든 알루미나 생산능력을 분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Klein 국장은 "이것은 반트러스트 당국간의 국제적 협력에 의해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결을 한 훌륭한 사례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Alcoa사는 1999년의 매출이 160억 달러가 넘는 세계최대의 알루미늄회사이다. Reynolds사는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의 매출이 46억 달러를 넘는 회사로 보그사이트를 채굴하여 SGA와 CGA를 정련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Tunney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동의판결안은 법무부의 Competitive Impact Statement에 따라 관보에 공표된다. 모든 사람은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운송·에너지·농업과장에 대하여 60일의 comment 기간중에 문서로서 comment를 제출할 수 있다. comment기간 종료 후 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인정에 근거하여 동의판결을 하게 된다.

■ 2000. 5. 3, 법무부 반트러스트국 발표

미 법무부, 항공사 항공권 판매 웹사이트 조사

법무부는 5월 18일, 5개 미국 항공사가 인터넷상에서 항공권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자금을 지원한 한 합작투자회사를 조사중이라고 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은 항공권 유통을 위해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설립을 발표한 당해 합작투자회사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법무부 대변인인 Gina Talamona는 말하였다. 아직 계획상 T2라는 명칭으로 통하고 있는 당해 계획은 설립주주들 - UAL Corp.의 유나이티드 항공, 노스웨스트 항공, 컨티넨탈 항공, 델타 항공 및 AMR Corp.의 아메리칸 항공 - 을 대표하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개발중이다. 또한 추가로 25개 항공사가 협력회원사가 되기로 합의하였으며, T2 관계자들은 이로써 인터넷상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편향적이지 않은 여행정보의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법무부의 조사를 환영하며 전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다짐한다"라고 T2 대변인인 Carl Rutstein은 성명을 통해 발표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이트가 모든 반트러스트법상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더 나은 여행정보 및 더 많은 선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유익하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여행사들과 지배적인 여행정보 웹사이트인 Travelocity.com은 T2가 경쟁을 감소시키고 저렴한 요금수준의 항공권 판매에서 자신들을 몰아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지난 2월 T2의 조사를 요구하였던 전미여행사협회(ASTA)는 USA 투데이지에 처음 보도된 이번 정부측 조사를 환영하였다. "ASTA는 법무부가 주요 미국 항공사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웹사이트의 개설은 소비자 후생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에 고양되어 있다"라고 ASTA 회장인 Joe Galloway는 말하였다. "이는 상점가를 폐쇄하고 이를 회사 소유의 점포로 대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Galloway 회장은 언급하였다.

그러나 T2측은 T2의 운영은 소유주인 항공사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웹사이트 운영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회원 항공사들은 금년 하반기에 T2가 개시될 때 최저 인터넷 요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을 것이나, 이들은 자신들이 원한다면 여전히 이러한 요금을 다른 판매업자에게도 자유로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utstein은 "우리는 몇몇 온라인 경쟁업체들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 예약 시스템이 우리의 사업 영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가 인터넷의 지배적인 여행정보 웹사이트(Sabre/Travelocity)를 새로운 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새로운 경쟁 속에서 갖게 되는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운영사업자인 Sabre Holdings Corp.가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는 Travelocity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애리조나 주 공화당의원인 존 맥케인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는 상원 상업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문제에 대해 6월 22일 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증인들 중에는 T2, Travelocity 및 ASTA의 대표들, 그리고 교통부 관리들이 포함되었다.

■ 2000. 5. 18, The New York Times

미 법무부, AT&T - MediaOne 기업결합 인가 조건으로 유선인터넷 방송 사업부문 매각 요구

미국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은 AT&T사와 유선방송 대기업인 MediaOne사와의 기업결합을, 이들 기업이 Road Runner 고속 유선인터넷 서비스를 매각하도록 하는 복잡한 일련의 규칙을 조건으로, 인가하기로 하였다.

1년 전, AT&T사는 명백히 미국 최대의 유선TV회사를 탄생시킬 거래를 통해 MediaOne사와 기업결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해 기업결합이 이미 Excite@Home을 지배하고 있는 AT&T사에게 유선TV와 유선인터넷 사업부문에 대한 지나친 통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5월 25일, 법무부는 AT&T사의 자산 중 일부의 매각이 강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이의가 타당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성명을 통해 "당해 기업결합은 제안된 대로라면 성장중인 광대역 시장에 반경쟁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자산매각은 AT&T사가 광대역 컨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거래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얻게 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궁극적인 수혜자가 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발표된 법무부와의 합의내용에 따르면, AT&T사는 Road Runner에 대한 MediaOne사의 지분을 늦어도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매각하기로 하였다. AT&T사는 당해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37%의 Road Runner 지분을 갖게 될 것이다. MediaOne사와 타임 워너사는 Road Runner 서비스의 공동소유주이며, 컴팩 컴퓨터사, 마이크로소프트사 및 Advance/Newhouse사 등이 소규모 합작선이다. 그 때까지 AT&T사는 Road Runner의 경영을 동 기업의 다른 부분과 분리시켜 유지할 것이 요구될 것이다. 당해 기업은 또한 유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자산을 계속 보유하는 것 및 Road Runner 가입자들을 Excite@Home 서비스로 이전조치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다. 이번 자산매각은 몇 달 전부터 예상되어 왔는데, 왜냐하면 AT&T사가 유선 인터넷 서비스 중 하나를 포기하겠다고 한 제안내용이 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AT&T사의 법률고문인 Jim Cicconi는 "Road Runner 매각은 우리가 직면하리라고 항상 예상했던 의무이며, 당해 동의명령은 공정하고 실행가능한 계획표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당해 자산매각이 있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광대역 서비스 - 고속 인터넷 접속을 포함하여 - 를 가입자들에게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당해 합의내용의 일부로서, AT&T사는 어떠한 종류의 가정용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임 워너사 또는 기업결합된 아메리카 온라인 타임 워너사와 제휴할 경우 사전에 미 법무부의 인가를 얻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들 기업 중 어느 하나가 어느 지역에서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에도 인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법무부는 이들 기업의 합의가 이들 두 대기업간의 경쟁을 감소시킨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이러한 요청을 인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Road Runner 지분의 매각은 AT&T사보다는 Road Runner에 더 안좋은 소식일 것이며, 이는 Excite@Home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Jupiter Communications사의 분석가인 Dylan Brooks는 "이는 Road Runner에게는 유리한 소식은 아니다. 이들은 기존 가입자, 그리고 장래의 가입자 중 상당수를 잃게 될 것이

다."라고 말하였다.

기업결합계획 내용에 따르면 AT&T사는 MediaOne사의 Road Runner에 대한 귀중한 지분 중 상당부분 - 고객 및 기술적 자산 - 을 Excite@Home의 구성자산에 옮겨놓을 수 있다. 이는 당해 유선 인터넷 회사의 가입자 수를 수십만명 증대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을 찾기 위한 광범한 새로운 영역을 제공하는 셈이 된다.

Road Runner와 Excite@Home은 전부 합쳐 미국 유선 인터넷 가입자의 75%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oad Runner가 규모가 더 작아서 약 73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동의명령은 25일 법원에서의 2단계 절차의 일부로 제출되었다. 법무부는 당해 기업결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기업결합은 광대역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해 소송과 함께 규제당국은 AT&T사와 법무부가 모두 서명한 동의명령을 제출하였다. 만일 법원이 당해 화해안을 인가하면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소는 해결되는 것이 된다.

당해 기업결합은 또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인가도 요하는데, 동 위원회는 이번 달 초에 "수일 내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었다.

■ 2000. 5. 25, The New York Times

미 연방법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개사로의 분할을 명령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6월 7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적어도 10년 동안 2개사로 분할된 상태로 존속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경쟁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였는데, 이는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엄격한 처벌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인 토마스 펜필드 잭슨은 모든 항소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분할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에 대한 제한 - 이 중 일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분할 자체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 은 90일 내에 시행될 것을 명하였다. 당해 명령은 연방대법원에까지 상소될 것이 거의 확실하나, 이것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명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데, 이는 부분적으로 당해 명령의 상당부분이 시행되는 데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산업계 전문가들은 PC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하여 혁신과 경쟁에 가하여졌던 제한이 풀림으로써 당해 명령은 결국에는 가격의 인하와 소비자 선택폭의 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만일 잭슨 판사의 명령이 상급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명령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소수로 구성된 범주에 놓게 되는 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AT&T사 및 스탠다드 오일사와 함께 정부명령에 의해 해체된 초대형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이자 공동설립자인 빌 게이츠는 분할명령에 대해 끝까지 법정다툼을 벌이고 패배한 산업계 거물인사로서 스탠다드 오일사의 존 D. 록펠러와 자리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다.

진부한 영화대본에 따르듯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은 6월 7일 잭슨 판사의 명령 전체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그리고 상소중에는 모든 명령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청구할 것임을 공표하였다. 게이츠 회장은 당해 명령을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근거없고 정당화될 수 없는 간섭"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적 재산의 창설자들에게 정부는 그 지적 재산이 지나치게 인기가 있다면 이를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전세계 PC의 90%에서 설치·운영중인 동 기업의 주요제품인 윈도우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소 단계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고 믿는다"라고 게이츠 회장은 잭슨 판사가 작년 11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새로운 독점을 조성하기 위해 PC용 운영체제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였다고 판결하였을 때 그가 취한 입장을 반복하였다.

잭슨 판사는 당해 사실관계 판결에 이어 지난 4월 워싱턴 주 레드몬드에 소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행위가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

다. 이는 6월 7일 명령의 배경이 되었는데, 당해 명령은 이러한 위반을 교정하기 위한 구제책들을 열거하고 있다. 7일 오후에 발표된 잭슨 판사의 명령은 강한 어조로, 미국 법무부 및 1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2년간의 당해 소송절차의 결과,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과 동 기업의 비양심적인 기업문화에 대해 심대히 불신하게 되었음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당해 소프트웨어 대기업이 "과거에도 신뢰성 없음이 입증되었으며… 자사의 영업관행 중 어느 것도 셔먼법(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 기업이 PC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시장에서 이미 행한 것과 똑같은 행위 - 즉 독점력을 확대하기 위한 강압적 영업전략 - 를 다른 시장에서도 여전히 행하려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최종명령을 작성하면서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마지막에 청구한 다수의 수정안들을 간단히 각하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업분할이 10년 대신 4년 동안만 지속될 것과, 4개월 대신 1년 이내에 기업분할 계획을 준비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청구하였었다. 당해 계획에는 두 개로 분할될 기업간에 지적 재산, 종업원 및 210억 달러로 추정되는 현금을 포함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잭슨 판사는 또한 빌 게이츠가 분할된 기업 양측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어느 누구도 두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를 겸임할 수 없도록 금하였다.

"명백히 〔잭슨 판사는〕 동 기업의 법 준수 능력이나 의사에 대해 그다지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법무부 주도의 소송에 참가한 주정부 법무장관들을 대리하는 변호사였던 D. Houck는 논평하였다. 이번 소송에서의 주요 원고였던 법무부는 대법원에 대하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항소를 직접 다루어 줄 것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러한 내용에 반대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워싱턴 D.C. 주재 항소법원에서의 과거 판결들은 기업분할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동 기업의 입장을 호의적으로 보아 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관리들은 대법원에로의 직접 상고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히 심리를 개시하고자 하는 매우 독특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커넥티컷 주 법무장관인 Richard Blumenthal은 말하였다. 현안들이 1심 재판에서 잘 적시되었으며, "재판의 지연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된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잭슨 판사의 명령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개의 기업으로 분할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대부분의 컴퓨터가 가동되도록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컴퓨터 운영체제를 개발 및 마케팅하는 기업이고, 다른 하나는 워드 프로세싱부터 게임, 그리고 웹TV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를 포함하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프로그램인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 및 마케팅하는 기업이다.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동 기업 제품의 라이센싱 조건을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이들이 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 판촉을 돕든 경쟁업체의 소프트웨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든 마찬가지이다. 윈도우 화면 디스플레이의 외관을 변경하는 PC 제조업체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은 금지되며, 동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이 아닌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청사진을 컴퓨터 제조업체 및 경쟁업체를 포함한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공유하여야 한다.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의 작동을 방해하는 소프트웨어를 마케팅하는 것이 금지된다.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분리하여 이들 프로그램이 별도로 구입 및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부 반트러스트국장인 Joel Klein은 "경쟁은 … 혁신을 방해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 기업분할이 있은 후에 이들 두 기업은 활기차고 강력하며 성공적인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기업분할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미치는 영향 - 또는 동 기업의 경쟁무대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 은, 이 정도 규모의 기업분할이 드물고 법적 항소에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불명확한 상

태이다. 만일 잭슨 판사의 판결이 지지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로 인해 탄생되는 기업들은 이전의 마이크로소프트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믿고 있는 반면 다른 분석가들은 이들 기업이 신규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믿고 있다. 전 노동부장관이자 매사추세츠 주 Waltham에 소재한 브랜다이스 대학의 경제학 및 사회정책학 교수인 Robert Reich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분할은 미국 첨단산업에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AT&T사도 분할되었으나 그 분리된 기업들은 전체보다 훨씬 경영성과가 우수했다."고 하였다.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인 Tom Miller는 만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업관행에 대한 잭슨 판사의 제한이 지지된다면 컴퓨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PC의 소프트웨어 구성에 거의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실제로 소비자들을 위해 행동하게 되어 선택폭을 제공할 능력을 매우 신속히 보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다수의 산업계 전문가들은 기업분할 자체보다도 잭슨 판사의 행위 관련 교정책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력 전망을 더욱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 이는 이 교정책들이 PC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서버 및 무선전화와 같은 새롭고 유망한 기술에서도 마케팅 및 개발협정 체결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소재한 Legg Mason Precursor Group의 분석가인 Bill E. Whyman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장래 성장은 인터넷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 관련 교정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탁상용 컴퓨터를 떠나 웹으로 들어설 능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잭슨 판사의 명령은 작년에 증언이 개시된 이후 줄곧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소송의 정점이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판결에서 잭슨 판사는 동 기업이 PC 운영체제시장에서의 윈도우의 지배력을 웹브라우저 및 여타 제품 시장으로 확대하려고 위법하게 노력하였다고 판결하였다. 그러한 행위는 넷스케이프사의 경쟁력 전망을 거의 파괴하였다고 잭슨 판사는 판결하였는데, 넷스케이프사의 내비게이터 웹브라우저는 익스플로러의 경쟁제품이다. 넷스케이프사는 시장점유율 저하가 가속화되자 작년에 아메리카 온라인사에 인수되었다. 잭슨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컴퓨터 운영을 더욱 쉽게 할 PC 디스플레이 변경 고안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윈도우 독점을 이용하였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0년 이상의 PC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지배에 대하여 여러 도전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도전 중에는 윈도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세대의 강력한 컴퓨팅 장치들이 있는데, 이에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셋톱박스가 포함된다. 법원의 제재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업체 및 이들의 상업적 파트너들에게 용기를 주었는데, 이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향력 확대 기도를 폭로하는 데 더욱 성공적이었다. 한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센싱 조건에 무력하게 굴복했던 컴퓨터 제조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대체적 운영체제를 제공하여 왔는데, 예를 들면 윈도우 독점에 대한 진정한 위협인 무료 리눅스 시스템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기업을 두 부분으로 분할하는 외에, 잭슨 판사의 명령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영업관행에 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동 기업이 시행유예를 인가받지 않는 한 90일 이내에 시행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대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동일한 윈도우 가격을 제시하여야 하고,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에게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하는 코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경쟁업체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컴퓨터 제조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말고, 컴퓨터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스템 구성상 유연성을 허용하고 일정한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콘들이 데스크탑에 표시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하며,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윈도우 운영체제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배타적 공급계약이나 경쟁제한협정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2000. 6. 8, Los Angeles Times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미 법무부 반트러스트 소송에 직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반트러스트 소송에서 승리한 여세를 몰아 정부는 이번에는 신용카드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6월 12일 법무부는 맨하탄 주재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변론을 개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소송은 비자사 및 마스터카드사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주요한 변화를 강요할지도 모른다. 법무부는 1998년 10월 당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두 신용카드회사가 채택한 규칙은 은행들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그리고 모건 스탠리 딘 위터사의 디스커버 카드와 같은 다른 카드 네트워크와 거래할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는 소비자 선택폭의 감소 및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기술적 혁신의 지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난 주에 있은 예비적 심리에서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사 대표인 Melvin A. Schwarz는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의 규칙은 "경쟁을 심히 제약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와 디스커버 카드의 매출액은 이들이 은행에 접속할 수 있다면 증가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는 이러한 주장을 반복하여 부인하였으며, 동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정부측을 위해 증언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신용카드 산업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배후조종을 하고 있다고 시사하였다.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 모두 비영리조직으로 설립되어 있다. 8,500개 회원은행점포의 대표들이 이사회 및 정책결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규칙으로 인해 은행들은 비자카드 및 마스터카드는 발급할 수 있지만 다른 카드의 발급은 금지되어 있다. 이들 두 기업은 현재 미국 신용카드 시장의 75%를 지배하고 있다. 아멕스 직불카드와 Optima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가 17%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디스커버 카드 및 다른 카드들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 반트러스트 담당 변호사인 Harry S. Davis는 만일 정부가 승소한다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 및 여타 독립적인 카드회사들은 은행 고객들에 접근하기 위해 주요 은행들과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와 같은 기업은 신용카드 발급능력이 확충되고 직불카드 도입여력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직불카드는 당좌계좌 또는 저축계좌와 연결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는 고객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은행간 경쟁의 증대, 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대안의 제공을 의미할 것이다"라고 Davis 변호사는 말하였다.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신용카드 분석가인 Bruce Brittain은 현재의 체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정부측의 주장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소비자 측에서 보면,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상당한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 거래은행에서 아멕스 카드나 디스커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소비자들은 원하기만 하면 수신자부담 전화를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아멕스 카드가 대형 은행과 연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멕스 카드가 전통적인 여행카드 수준을 넘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스커버 카드는 주로 국내시장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형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은 월마트사 및 20개 기타 소매업체들이 비자사와 마스터카드사가 이들 소매업체로 하여금 직불카드를 받도록 강제하기 위해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자신들의 지배력을 이용하였다고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인데, 이들 카드회사는 직불카드에 대해 상당한 거래수수료를 청구하여 왔다.

이달 초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당해 소송에 대해 집단소송 지위를 부여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심리하기로 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소매업체는 18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2000. 6. 12, Los Angeles Times

영 국

영국 공정거래청, 제재금의 적정액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영국 공정거래청 장관은 1998년 경쟁법 제38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재금의 적정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발표하였다.

동법 제36조에 의하면 제재금의 산정은 다음의 5단계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 전반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① 위반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 율을 사용하여 당해 사업자의 매출액에 의한 산정

② 기간에 의한 조정

③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한 조정

④ 가중 및 경감할 수 있는 요인에 의한 조정

⑤ 매출액의 10%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이중처벌인 경우 조정 가이드라인의 후반은 감면조치에 관한 것으로 다음 내용과 같다(전문).

3.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조치

○ 카르텔사건의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감면 또는 경감

3.1 카르텔행위에 참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자신의 관여를 중지하고 공정거래청 장관에게 카르텔 행위를 알리기를 원한다고 해도, 막대한 제재금을 부과받을지 모를 위험때문에 이런 행위를 억제했을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업자에게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관은 제일 먼저 신고한 자이면서 3.4항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한 카르텔 참가자에 대하여 제1장의 규정에 따라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제재를 완전히 면제해 준다. 또한 3.6항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카르텔 참가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완전히 면제해 줄 수 있다. 제일 먼저 신고한 자는 아니지만, 또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업자는 이하에 언급된 3.8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재금액의 감경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2 장관은 카르텔을 자기에게 통보하고 또한 이하에 규정된 상황에 있어서 장관에 협력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대적인 취급을 해주는 것이 영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은 카르텔이 비밀리에 행해지고 은닉된다는 성격에 있다. 이런 행위가 발견되고 금지됨으로써 보호되는 구매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카르텔 참가자이며, 장관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정책목표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금전적 제재의 완전 면제

3.3 카르텔 참가자가 카르텔 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신고하고 3.4항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에 관한 금전적 제재로부터 완전히 면제된다. 만약 관련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신고하고 또한 이하 3.6항에 정해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에 관한 금전적 제재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 카르텔 개시 전에 제일 먼저 신고한 자에 대한 완전 면제

3.4 본 항에 따라 완전한 감면을 얻기 위하여는 사업자는 장관이 관련사업자의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카르텔 행위에 관한 증거를 장관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자이어야 한다. 단 장관이 카르텔 혐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당해 사업자는 a) 장관에 대해 카르텔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입수 가능한 모든 정보, 문서, 증거를 제공하고, b) 조사기간 중 계속적이고 완전한 협력을 유지하고, c) 타사업자에 대하여 카르텔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카르텔에 있어서 선동자로서 행동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어야 하고, d) 카르텔을 개시한 시간부터 카르텔에의 깊은 참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3.5 사업자가 상기 3.4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하 3.6항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때, 금전적 제재로부터 완전한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 조사가 개시된 후에 제일 먼저 신고한 통보자에 대한 완전 면제

3.6 본 항에 따라 완전한 면제의 가능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 본 항에 따라 면제를 구하는 사업자는 장관이 제1장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제안을 서면으로 하기 전에 카르텔의 존재와 활동의 증거를 장관에게 제공하는 최초의 자

이어야 한다.

· 상기 3.4항 a)에서 d)까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7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행해진 장관에 의한 면제허가는 재량적인 것이다. 장관이 당해 사업자를 면제해 주기 위하여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신고한 단계이든 장관이 면제 위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결정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단계인가 아닌가를 고려한 다음 사업자가 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납득시켜야 한다.

○ 카르텔 사건에 있어서 금전적 제재수준의 경감

3.8 위반결정안의 서면통지를 하기 전에 카르텔 행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신고한 자는 아니며 상기 3.4항 또는 3.6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부과되기로 예정된 금전적 제재액에 대하여 최대 50%까지 경감을 인정한다.

사업자는 a) 장관에 대하여 모든 정보, 문서, 증거를 제공하고, b) 조사중 계속적이고 완전한 협력을 유지하고, c) 카르텔에 관한 정보를 개시한 때부터 카르텔 행위에의 새로운 참가를 중지하여야 한다.

○ 면제 또는 제재금 수준의 경감요청을 위한 절차

3.9 여기에 언급된 우대적인 취급의 이익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청 카르텔 심사부장의 사무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에게 접촉할 필요가 있다. 이 절차는 당해 목적을 위해 당해 사업자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

○ 금전적 제재의 추가적 경감

3.10 하나의 시장(제1시장)에 있어서 카르텔 활동에 관해 1998년 경쟁법에 근거하여 장관에 의한 조사에 협력하고 있는 사업자는 또하나의 시장(제2시장)에서 제1장의 위반이 되는 카르텔에도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3.11 사업자가 제2시장에 있어서의 활동에 관해 3.4항 및 3.6항에 따라 금전적 제재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1시장에 있어서의 협력으로 얻은 감경에 추가하여 자기에게 부과된 금전적 제재의 경감도 받게 된다.

○ 비밀성

3.12 카르텔의 증거를 제출한 사업자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사업자로서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은 조사과정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해 사업자의 신분을 비밀로 하도록 노력한다.

■ 2000. 4. 23, 영국 OFT 발표

E U

EU, 영국 및 벨기에의 Coca-Cola Enterprise 사무실 수색

유럽위원회는 5월 18일, Coca-Cola Enterprise가 유럽연합 경쟁규칙을 위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서 동 기업의 런던 사무실과 브뤼셀 지사를 수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영국 및 벨기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CCE의 유통관행이 EU 경쟁규칙의 위반인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구성하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EU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기자회견에서 말하였다.

애틀란타에 소재하고 있는 CCE는 세계 최대의 코카콜라 바틀러(병포장업체)로서 코카콜라사가 약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수색은 코카콜라사의 주요 경쟁업체인 펩시사를 비롯하여 다른 기업들로부터의 반트러스트 이의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는 작년 7월 코카콜라의 전세계 유통망에 속하는 3개의 바틀러 - 스칸디나비아의 Coca-Cola Nordic Beverages사, 독일의 Coca - Cola Erfrischungsgetr-aenke사 및 사무소 소재지가 런던인 동유럽의 Coca-Cola Beverages사 - 사무실에 대한 급습에 뒤이은 것이다.

CCE는 "우리는 이번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관련국 및 유럽연합의 경쟁법과 규정 모두를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하였다. 유럽위원회는 CCE가 소매업체들로 하여금 경쟁업체의 제품 대신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위법한 인센티브를 사용하였는지를 조사중이라고 확인하였다.

코크, 환타 및 스프라이트와 같은 코카콜라사의 유럽 브랜드들은 유럽시장에서 대략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의 수색을 통해 EU 규제당국은 코카콜라사가 독일, 오스트리아 및 덴마크에서 경쟁업체들을 배제하기 위해 소매업체들에게 환급금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0,0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압수하였다. 당시 EU 경쟁담당위원인 Karel Van Miert는 특별보너스 및 환급금 시스템을 통해 한 제품을 다른 제품보다 우대하도록 소매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세 유형의 인센티브를 조사한다고 하였었다.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조사는 당시와 동일한 조사의 일부라고 하였다.

반경쟁적 행위로 EU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된 기업들은 최고 전세계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벌금은 부과된 적이 없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인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종류의 반트러스트 조사를 종결짓기 위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였다. 몬티 위원은 "이러한 조사의 기간은 대체로 사건의 복잡성 및 유럽위원회의 의혹이 정당한 것으로 밝혀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였다.

■ 2000. 5. 18, The New York Times

EU, 파이저사의 Warner-Lambert사 취득 인가

유럽위원회는 5월 23일, 미국 대형 제약회사인 파이저사가 경쟁업체인 Warner-Lambert Co.를 취득하려는 계획을 조건부로 인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인해 미국 최대이며 전세계적으로는 2위 규모의 제약그룹이 탄생하게 된다.

유럽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관련기업들의 특정 시장에 대한 경쟁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건의 자산매각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서약이 당해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심각한 의문을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라고 유럽연합의 반트러스트 당국은 밝혔다.

새로이 탄생하는 그룹은 Warner-Lambert사의 치매 치료제인 Cognex에 관련된 모든 자산을 매각할 것이며 오스트리아에서 Warner-Lambert사의 Dilzem 제품을 라이센스할 것이다. Dilzem은 고혈압 및 협심증 치료에 사용된다. 유럽위원회는 또한 당해 기업결합으로 새로이 탄생하는 기업은 오스트리아 및 독일에서 antihelmintics - 위장의 기생충을 박멸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 - 에 관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새로이 탄생하는 이 그룹은 이들 시장에서의 파이저사의, 또는 Warner-Lambert의 antihelmintic 제품 생산을 위한 자산 전체를 제3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파이저사는 5월 22일, 유럽위원회가 Warner-Lambert사의 취득을 인가하였다고 한 바 있다. 동 기업은 유럽 규제당국이 3개의 유럽내 소규모 보건제품 사업부문을 매각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들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은 1,000만 달러에도 못 미친다. 유럽위원회는 5월초에 관련 기업들이 반트러스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양보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해 기업결합에 대한 결정의 시한을 연장하였었다.

파이저사의 주주들은 4월 27일 당해 기업결합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는데, 이 기업결합은 2월 7일 처음 발표될 당시 930억 달러의 규모로 평가되었었다.

■ 2000. 5. 23, The New York Times

EU, 마이크로소프트사의 Telewest사 취득 우려

유럽위원회는 5월 26일,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영국 유선방송회사인 Telewest Communications사에 대한 MediaOne Group Inc.의 29.7% 지분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하여 동 위원회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였다. "우리는 지난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이의성명서를 발송하였다"고 동 위원회 대변인인 Amelia Torres

는 말하였는데, 동 성명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매우 일상적인 절차적 조치이다. 이는 우리가 기업결합이나 취득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개시하는 사건의 90%의 경우에 취하는 조치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서면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상세하게 우리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응답하여야 한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이의성명서는 EU 반트러스트 규제당국의 경쟁상 우려를 표시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양보안 제시를 요구하는 법률문서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해 취득이 인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사의 주장을 제출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하였다.

유럽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3월 22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계획에 대한 4개월간의 조사를 개시하였다고 밝혔으며, 디지털 유선방송산업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영국에서의 디지털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당해 취득이 영국 유선방송 가입자들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몬티는 당해 취득이 프랜차이즈 지역 내에서 유선방송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업체로서의 기존 지위를 강화할 것임을 우려한다고 하였는데, 이들 기업이 이미 제출한 서약은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는데 충분치 못하였었다.

5월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해 이의성명서는 이번 취득으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유선망을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 TV, 인터넷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와 같은 시장에서 "병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것으로 인용하였다.

영국 위성방송사업 경쟁업체인 BSkyB사의 대변인은 동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Telewest 조사에 관하여 아직 유럽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그렇게 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하였다. BSkyB사는 경쟁업체들은 원하는 대로 BSkyB사 가입자들의 위성수신 안테나로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는 반면 BSkyB사는 유선방송회사의 동의 없이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유선방송회사들이 더 이상 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EU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디지털 시대에 유선방송회사들은 여전히 각종 채널과 양방향 서비스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대하여 봉쇄할 수 있는 반면에 디지털 위성은 공개경쟁의 장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대변인은 로이터사에 당해 이의성명서는 단지 "절차상 조치이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Telewest사와의 합의를 진행시키도록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이것이 경쟁을 조장하며 고속 인터넷 및 광대역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당해 시장에서 신규진입자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였다는 비난은 당치않다고 하였다.

유선방송회사인 NTL사는 26일,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유선TV 기술 영역에서 지나치게 지배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NTL사의 지분 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비디오 레코더를 비롯하여 셋톱박스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NTL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셋톱박스 관련기술을 사용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였다. 현재 자사의 셋톱박스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Telewest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잠재적인 주주로서 환영한다고 하였다.

당해 조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미국에서 반트러스트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된 이후 분할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유럽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2000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EU 경쟁규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 2000. 5. 26, Los Angeles Times

EU, ADM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에 카르텔을 이유로 벌금 부과

유럽위원회는 6월 7일 미국 기업인 Archer Daniels Midland Co., 일본의 아지노모토사, 그리고 여타 3개 기

업에 대하여 전세계적 사료 첨가제에 관한 가격고정 카르텔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1억 1,000만 유로화(1억 5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라이신 시장에 대한 4년간의 조사 이후, 동 위원회는 일리노이주에 소재한 농작물 대기업인 ADM사에 4,730만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유럽연합 반트러스트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유럽위원회가 부과한 벌금 중 네번째로 큰 금액이다.

당해 결정에 대하여 ADM사는 법률적 선택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번 벌금이 동 기업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본 기업은 7일 유럽위원회가 1992년 6월부터 1995년까지의 기간 동안 라이신 시장에서 이루어진 동 기업의 행위에 관하여 대략 4,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라고 동 기업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녀는 "당해 벌금은 본 기업의 수익에 악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ADM사는 동 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하는 대로 법률적 선택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주요 식품가공업체인 아지노모토사는 2,830만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또다른 일본기업인 Kyowa Hakko Kogyo Co Ltd.는 1,320만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기업인 제일제당사와 세원사는 각각 1,220만 유로화와 890만 유로화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 경쟁당국인 동 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반경쟁적 행위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카르텔을 적발하겠다는 동 위원회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U 경쟁담당위원인 마리오 몬티는 "이번 결정은 엄중하면서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 동 위원회는 이러한 종류의 핵심적 카르텔에 대하여 엄격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무거운 벌금이 적절한 이유이다"라고 하였다.

동 위원회는 아지노모토사와 세원사가 당해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 EU 규칙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 부과된 벌금의 50%를 감액받았다고 하였다. 제일제당사와 Kyowa사는 이들이 제공한 증거 때문에 30%의 벌금을 감액받았다. ADM사는 당해 조사에 협력하지 않았으나 동 위원회의 "이의성명서"에 적시된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 이 벌금액은 10% 감액되었다고 유럽위원회는 밝혔다.

이들 5개 기업은 인공 아미노산 - 단백질의 원료 - 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라이신은 영양을 위해 동물사료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이다. 이는 돼지 및 가금(家禽) 사료에 사용된다.

유럽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5개 기업이 전세계적으로 라이신 가격을 고정하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적어도 1990년 7월부터 1995년 6월까지 판매량 쿼터를 고정하고 쿼터 설정을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동 위원회는 밝혔다. 유럽위원회는 몇몇 카르텔 참가업체들이 위법한 공모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미국 반트러스트 당국에 의해 기소되기 바로 전인 1996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 1996년 미국 법무부는 ADM사가 라이신 및 구연산 가격을 고정하였다고 유죄를 인정한 이후 동 기업에 대하여 기록적인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었다. 법무부의 조사로 아지노모토사, Kyowa Hakko Kogyo사 및 Sewon America Inc.도 기소되었다. 1998년 ADM사는 캐나다 시장에서의 가격고정에 대해 1,600만 캐나다 달러(1,080만 미국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였다.

동 위원회는 1992년 6월부터 1995년 6월까지 ADM사의 유럽시장 진입시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카르텔을 하였다는 사실을 1996년 7월에 아지노모토사가 알려왔다고 하였다.

아지노모토사의 벌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한다는 결정을 설명하면서, 유럽위원회는 당해 일본 기업이 카르텔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동 위원회는 "그러나 동 기업은 당해 카르텔의 주도기업이었으며, 아지노모토사, Kyowa사 및 세원사 등 아시아 기업 3개사가 관련되었던 이전의 카르텔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U법에 따르면 반경쟁적 행위를 하였다고 결정된 기업들은 최고 전세계 수입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거액의 벌금은 한번도 부과된 적이 없다.

유럽위원회가 반경쟁적 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벌금 중 최고액은 1998년 폴크스바겐사를 상대로 부과한 1억 200만 유로화였다.

산업계 분석가들에 따르면 라이신

을 비롯한 아미노산은 ADM사로서는 비교적 소규모의 생산라인이지만 가장 이윤이 높은 제품군에 속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라이신 시장은 연간 2억 5,000만 유로화의 규모라고 동 위원회는 1997년에 밝힌 바 있다.

■ 2000. 6. 7, The New York Times

이탈리아

이탈리아, 휘발유 가격 고정 적발돼

이탈리아 반트러스트 위원회는 이탈리아의 주요 석유회사들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가격고정을 하였다 하여 6월 8일 위법결정을 내렸으며, 3억 5,000만 달러의 벌금납부를 명령하였다. 휘발유가격이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가운데, 이탈리아 운전자들은 1999년에만 다른 서유럽 운전자들에 비해 최소한 68만 5,000달러를 더 지불하였다고 반트러스트 위원회는 밝혔다. 이들 기업 - Agip Petroli사, Erg사, Esso Italiana사, Q8사, 셸사, Tamoil사 및 Total-fina사 - 은 당해 결정에 즉각 반발하였다.

"동 위원회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탈리아의 석유회사 연합은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이 위원회가 높은 휘발유 가격에 대한 이탈리아 국내의 분노에 굴복하였을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휘발유 가격은 영국, 프랑스 및 독일보다도 높았으며, 이는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부 측의 우려를 촉발하였다. 휘발유가격의 인상은 전국 방송망을 주별로 - 때로는 날마다 - 장식하였다.

반트러스트 위원회는 이들 기업에 대하여 1999년 매출액의 3.5%에 해당하는 벌금 납부를 명하였는데, 이 금액은 대략 3억 5,000만 달러에 해당된다. 이번의 벌금은 반트러스트 위원회가 명한 최고액이다. 이는 가격고정 주장에 대한 8개월의 조사 끝에 나온 것이다. 이탈리아 소비자단체들은 당해 벌금이 너무 낮다고 하였다.

■ 2000. 6. 8, The New York Times

일 본

공취위, 이동전화 활성화 문제에서 도코모사 독립성 촉구

공정취인위원회의 「정부규제 등과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회」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보고서의 개요가 6월 8일 밝혀졌다. 작년 7월에 개시된 NTT사의 지주회사체제에 대하여 동 보고서는 「당초 기대했던 것 같은 경쟁촉진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급성장한 계열기업인 NTT 도코모사에의 출자비율(현재 67.1%)을 낮추고, 그룹으로서의 NTT사의 관여도를 작게 함과 동시에 도코모사의 경영의 자유도를 높여 이동전화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제언하였다. 미-일간의 현안인 NTT사의 접속요금문제에 관하여서도, 통신업계의 경쟁촉진이 실현되면 시장원리가 작동하게 되어 적정수준까지 내려간다는 견해를 보였다. 공취위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우정성에 전달, 앞으로의 통신시장개혁의 원안으로 할 생각이다.

구 NTT사는 작년 7월에 재편성되어, 지주회사 밑에 동일본과 서일본의 두 개의 지역통신회사와 장거리 국제통신회사인 NTT 커뮤니케이션즈의 3개사가 조직되었다. 도코모사는 구 NTT사로부터 분리되어 1991년에 탄생되었으나, 도코모사의 경영은 여전히 NTT사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 또한 도코모사는 NTT사 산하로 이동전화시장의 5할을 넘는 거대한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도코모사의 현상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로 도코모사에 대한 출자비율이 낮아지면 도코모사의 독립성이 높아지고, 이동전화의 효율적인 보급에 한 단계 탄력이 붙는 것이 기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00. 6. 9, 요미우리신문